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**정책사업명**	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		
② **추진배경**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		
③ **사업개요**	1. 관계법령 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의2 나.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2. 입법예고 : 2019. 3. 11. ~ 4. 1. 3. 주요내용 가.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 나. 군수의 책무를 정함(안 제2조) 다.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정함(안 제3조) 라. 정책과제의 추진, 군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함(안 제4조·제5조) 마. 자치분권협의회의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~제11조) 바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을 규정함(안 제12조)		
④ **사업부서**	행정과 주민자치담당	⑤ **담당자**	과 장 신영수 주무관 이종섭
⑥ **선정기준**	조례 제정	⑦ **사업기간**	2019. 3. 7. ~ 2019. 5. 15.

<그간 주요 추진내용>

○ 조례 공포	‘19.05.15	
○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(본회의) : 가결	‘19.04.24	
○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(총무위원회) : 원안가결	‘19.04.19	신영수 행정과장 등
○ 조례규칙심의회 심의	‘19.04.10	이광옥 부군수 외 위원 류현복 담당주사(제안설명)
○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	‘19.04.02	류현복 담당주사(제안설명)

○ 입법예고	‘19.03.11 ~ 04.01	
○ 조례 제정 계획수립 ※ 「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계획	‘19.03.07	구인모 군수 이광옥 부군수 손용모 국장 신영수 과장 류현복 담당주사 이종섭 주무관 〈관련자〉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허동현 규제개혁담당주사 임순행 여성보육담당주사